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의 일원화 방안

강동범* · 배두열**

요 약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lans to Integrate for the Polygraph Institution

Kang Dong Beom* · Bae Du Yeol**

ABSTRACT

As the capitalist society was launched, false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for the personal profit. Study after study since a long time ago has concluded that today's polygraph developed in order to determine these false. In Korea the polygraph has been used actively in current investigation agency, and passively in a private enterprise by a former polygraph examinant from the investigation agency. Each investigation agency is recruiting polygraph examnants through the strict qualifications, training education. Decision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the polygraph test results are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reliability on the efficiency of a test equipment, way to ask, qualities of polygraph examinant, etc.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the issues mentioned in the precedents is that examnants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are being trained by dual education not centralized. Because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has its own training and polygraph examinant, each agency can occur variations every agency or every examinant, therefore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is needed. In this way,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olygraph test results and make a retrenchment in the educational budget in accordance with examinant training of each agency.

Key words : Polygraph, Qualities of Polygraph Examinant, Education of Polygraph Examinant, Unific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Reliability of the Test Results

접수일(2015년 2월 2일), 수정일(1차: 2015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2015년 2월 25일)

* 동국대학교/법학과

** 대구과학대학교/경호무도과

1. 서 론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거짓말탐지기 도입 시기 및 최초 검사 실시기관을 살펴보면 1957년 군 헌병에서 최초로 거짓말탐지기 장비가 도입되었다고 하고 있으며[1], 1960년 당시 지정한 헌병 대위가 미국 헌병학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돌아와 미국 Stoelting 회사의 거짓말탐지기인 “An/uss-2D”를 가지고 1961년 1월 4일 절도사건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방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2].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육·해·공군 헌병,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에서 범죄사건 조사 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탐지기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시행 된지 50여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첫째, 검사장비의 성능이 우수할 것, 둘째, 질문방법이 합리적인 것, 셋째, 검사관이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 일 것을 판시하고 있다.¹⁾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례에서 위 세 가지 조건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검사관의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으로 증거능력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

여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면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2. 거짓말탐지기 원리 및 검사방법

2.1 거짓말탐지기 원리

거짓말탐지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 나는 것에 대한 불안, 긴장, 초조, 공포, 두려움 등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반드시 신경계 및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생리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데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

김진모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감정은 심리적 갈등, 공포심, 흥분, 죄의식 등 다양할 수 있으나 거짓말탐지기검사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 공포심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짓말이 탐지되고 그로 인해 중대한 변화 또는 이익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피검사자의 교감신경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에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질문에 더 큰 반응을 하게 되어 생리적 반응인 혈압, 혈류량, 맥박, 호흡 등 전기반응을 거짓말탐지기의 여러 측정 장치가 기록한 차트상에 나온 반응을 전문가인 검사관이 종합,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

이와 같이 거짓말탐지기는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분석하여 신체변화를 통해 거짓을 가려내는 것으로 거짓말 그 자체를 판별해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을 말하게 되면 스스로 느끼게 되는 공포, 갈등, 불안, 죄의식, 흥분 등 감정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근거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여 주는 과학수사 장비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결과가 거짓말에 기인한 감정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난 것인지 혹은 다른 심리상태의 변화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검사관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47 판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도2087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 712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6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277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2.2 거짓말탐지기 검사방법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는 “검사 전 준비, 검사 전 면담, 기본검사(본 검사), 검사 후 면담”으로 나뉜다. 통상 거짓말탐지기 검사라고 하면 이 네 가지 검사절차 중에서 기본검사 단계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검사는 검사 전 준비나 검사 전 면담의 존재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검사 후 준비절차 없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백이나 기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 네 가지 검사절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서 상호불가결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2.2.1 검사 전 준비

검사 당일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였으나 피검사자 조건이 부적합할 경우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뢰를 받게 되면 검사관은 필요한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거나 담당자와 연락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사의뢰결과 검사적합 판정을 내려 검사일자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검사 실시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검사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정한다.

검사관은 검사날짜가 정해지면 검사할 내용과 피검사자에 대한 검사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어떤 검사기법을 선정하여 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만일 검사 시 긴장절정검사(Peak of Tension Test: POT)²⁾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

면 최소한 검사 1주일 이전에 미리 검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격, 형태에 맞게 검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2.2 검사 전 면담

검사 전 면담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이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관련된 의문에 대한 면담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 피검사자가 출석하여 1시간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수사 담당 형사가 의뢰한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 진술 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검토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출석한 피검사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대상자로 적합한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부적격자 이외에 면담을 통해 검사 전 안정을 유지 하였는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피검사자가 검사장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제거를 위해 거짓말탐지기 장비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 검사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도 피검사자가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검사받기에 적합한지를 세심하게 검토한다.

2.2.3 기본 검사(본 검사)

검사관이 검사 전 면담을 통해 피검사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

2) 긴장절정검사는 범죄에 대한 다중선택 형태의 질문을 하여 반응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질문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검사관과 범죄자가 해당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종류로는 재결절문법과 탐색질문법이 있다. 재결절문법(Known Solution POT: KS-POT)은 수사관과 피해자 외에는 범인밖에 모르는 범죄 사실을 피검사자가 알고 있는지 밝히는 것으로, 진술의 진위를 직접 검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조질문법(CQT)과 차이가 난다. 이 질문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에서 범인만 아는 어떤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마스크 보도나 소문 등을 통해 알려진 범죄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탐색질문

법(Probing POT: PR-POT)은 범죄 사실에 대해 범인은 알고 있지만 수사관과 피해자는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을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추정하여 수사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탐색질문법(PR-POT)이다. 재결절문법에서는 검사관이 미리 재결절문을 알고 있는데 반해 탐색질문법에서는 질문표 중 어느 질문 항목이 검사 대상 사건의 범죄 사실인지 고도의 확률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전체가 된다. 일련의 질문 중에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판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추후의 검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질문법을 사용할 때는 담당 수사관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

하여 기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관은 기본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스스로 검사를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말탐지검사 동의서³⁾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검사의 성질, 검사장비 및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피검사자가 검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조사표, 질문표 등을 작성하고, 검사 후 도표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식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력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기본 검사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기구를 신체 부위에 부착을 한 다음 검사기법에 따라 10개 전후의 질문을 작성하여 1개의 질문 시 약 15초에서 20초 사이에 한다.

피검사자의 호흡패턴, 땀샘, 혈압, 맥박의 변화를 여러 번 측정해서 다수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거짓을 탐지하게 되는데 실제 4개의 센서를 흉부, 복부, 두개의 손가락, 이두박근에 부착한다. 이 네 곳에 센서를 붙이는 이유는 생리학적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센서를 부착한 뒤 바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비검사를 실시하는데 숫자 1부터 9까지 자기가 생각한 번호를 종이에 적게 한 다음 자신이 적은 숫자를 검사관이 물어보았을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이는 진실을 말할 때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때의 생리적 변화를 파악하여 검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다.

예비검사를 마쳤으면 기본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검사측정 시 질문은 10개 내외로 실시하고 피검사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아니오” 둘 중에서만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질문이 끝나면 짧은 휴식 후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문항을 순서만 달리해 3회에서 4회 가량 반복하여 질문을 한다.

2.2.4 검사 후 면담

검사 후 면담이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후 피검사자에게 시행하는 면담으로 혈압측정 장치의 압력을 제거하면서 시작한다. 검사관은 검사 전 면담과 같이 친절하지만 전문적인 자세로 검사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피검사자와 나눈다. 이 때,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이 어떻게 측정되어 거짓말탐지기로 나타났는지 간단히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검사결과에 담당 수사관이 피검사자와 동행했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주며, 만약 피검사자가 혼자 왔을 경우 피검사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나 공문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검사 후 면담에서는 주로 검사 중 피검사자가 한 행동이나 나타난 반응을 통해 피검사자가 솔직하게 검사를 받았는지 검사 중 최대한 집중하였는지의 여부와 이를 통해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관이 검사결과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검사자는 자신이 아는 사실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짐작 할 수 있게 된다. 검사 전 면담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사관은 피검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이해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사에서 피검사자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조언해 줄 수 있다. 만약 검사결과 거짓임이 밝혀진 피검사자에게는 관련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보여주며, 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피검사자가 가장 잘 알 것이니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과 잘 이야기해보라고 충고해 줄 수 있다.

3.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교육실태 및 검사 실시현황

3.1 수사기관의 검사관 교육실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한국폴리그래프협회(Korean 거짓말탐지기 Association, 이하 “KPA”

3)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라고 한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양성교육(기본교육+인턴교육)을 <표 1>과 같이 따르고 있다.⁴⁾

<표 1>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양성교육 내용

| 구분 | 교육 내용 및 시간 | 강사 조건 | 비고 |
|------|---|--|-------|
| 기본교육 | 거짓말탐지기 관련분야 : 240시간 이상 - 개요 및 용어 등 - 역사 - 각국의 활용실태 - 장비 - 타당성 및 신뢰성 - Chart마킹 - 검사질문 - 검사기법 - Chart분석 - 대응수단 - 면담 및 심문 - 법적문제 - 윤리분야 - 실습 등 |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자격증을 가진 거짓말탐지기검사 업무 전담경력 5년 이상인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3개 기관 이상의 교관으로 편성할 것. | 교육감독관 |
| | 생리학 : 25시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 | 심리학 : 25시간 이상 | | |
| | 정신병학 : 8시간 이상 | | |
| | 약리학 : 4시간 이상 | | |
| 기 타 | | | |
| 인턴교육 | - 6개월 이상 - 실제사건 50명 이상 |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자격증을 가진 자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업무 전담경력 5년 이상인 자 | 인턴감독관 |

출처: KPA 검사관 양성교육 규정.

4) 현재 우리나라 검사관 양성교육 실태는 각 수사기관에서 검사관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검사관 운영부서에서 KPA에 요청하게 된다. KPA에서는 각 수사기관의 요청인원을 받아 적정인원(20명)이 되면 양성교육 일정을 잡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검찰청에서는 독자적인 교육으로 검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양성교육은 각 수사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검사관 양성교육은 2008년, 2011년, 2014년도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2013년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사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방부에서는 1999년, 2001년, 2003년, 2013년, 2014년도에 검사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03년, 2005년, 2014년도에 검사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3.1.1 검찰청

검찰청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검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주관 하에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기초이론 과정 3개월 이상, 실무과정 3개월 이상 모두 6개월 이상으로 한다. 기초과정은 심리학, 생리학, 약리학, 기기학 및 검사절차 등을 포함하고, 실무과정은 3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검사관 지도하에 20명 이상의 실제검사를 경험케 하여야 한다.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3.1.2 경찰청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의 양성교육 내용은 ‘거짓말탐지기검사관 양성과정’ 12주 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 동안 인턴교육⁶⁾을 수료한 후 거짓말탐지기검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KPA에서 발급하는 검사관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매년 2회, 1박 2일 동안 경찰청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 소속의 검사관뿐만 아니라 타소속의 검사관도

5) 심리생리검사규정<대검찰청예규 제710호, 2014. 3. 31.> 제6조.
6) 6개월 동안의 인턴교육과정은 감독관의 지도하에 50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훈련을 하게 된다.

보수교육에 참여하고자 신청을 하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관련 세미나 참석을 한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대체하고 있다.

3.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의 양성 교육 내용은 심리학, 약리학, 생리학 등 기초학문수업은 각각 20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트분석, 질문작성법, 기기설명 등에 대한 이론수업 150시간, 실습 155시간 등 총 432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5].

3.1.4 국방부

국방부에서는 KPA 검사관 양성교육과정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의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턴교육 수료 후 거짓말탐지기검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KPA에서 발급하는 검사관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다. 검사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도 다음과 같은 이수 조건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연구발표회, 학술세미나, 정기총회, 기타 강연회 등을 포함하여 5년 이내 8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⁷⁾

3.2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각 수사기관별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 조사본부의 실무자와 유선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으나, 검찰청에서는 내부규정으로 통계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다음 <표 2>는 각 수사기관에서 최근 5년 동안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이다.

7) 국방부 소속 검사관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2> 수사기관별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단위: 건

| 연도 소속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경찰청 ⁸⁾ | 9,690 | 9,309 | 9,472 | 11,297 | 11,016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⁹⁾ | 415 | 331 | 513 | 593 | 500 |
| 국방부 조사본부 ¹⁰⁾ | 389 | 367 | 331 | 384 | 350 |

출처: 본 연구자가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연도별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수사기관 중 경찰청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형사사건과 교통관련 사건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검사종류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기타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통사건의 검사종류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신호위반, 기타사건으로 분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사건의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건의 검사 실시현황만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해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 건수 및 검사 실시건수가 타 수사기관에 비해 많은 것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으로 보아 수사에 있어 거짓말탐지기 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거짓말탐

8) 경찰청의 연도별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은 2015년 2월 24일 서울 지방경찰청 검사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파악하였다.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도별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은 2015년 1월 30일 법공학부 법심리과 심리연구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파악하였다.

10) 국방부 조사본부의 연도별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은 2015년 1월 30일 과학수사연구소 검사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파악하였다.

지기 검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과 2014년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 2012, 2014년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 건수는 많더라도 피검사자가 검사 전 자백을 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건수에 통계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꾸준히 검사의뢰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검사관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의 반응으로 보아 검사관의 증원에 따른 자질강화 및 교육을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4.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개선방안

본 논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수사기관별로 해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의 교육에 있어서는 개선방안이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이 특정의 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일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양성학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학교의 수가 16개에 달하고 있으며,¹¹⁾ 이뿐만 아니라 국제학교도 16개가 있다.¹²⁾ 반

면 우리나라는 거짓말탐지기 학교뿐만 아니라 일원화된 교육시스템마저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KPA에서 검사관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 규정을 두어 일부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교육 시 KPA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각 수사기관별로 자체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을 뿐 거짓말탐지기 검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각 수사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일부 수사기관만 공유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 현재 각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한 정보공유를 꺼려하는 이유로 검사관의 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기관이 향후 과학수사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도 상호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 각 수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화되지 않은 검사방법은 일관성이 결여된 검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중복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관리 주체의 문제는 각 수사기관 사이의 다툼의 대상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관리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6]. 따라서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립 기관에서 검사관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검사관들이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단계에 도

11) 그루지아의 “American International Institute of Polygraph”, 뉴 햄프셔의 “New England Polygraph Institute”, 메릴랜드의 “Maryland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버지니아의 “Virginia School of Polygraph”,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National Center for Credibility Assessment (NCCA)”, 캘리포니아의 “Backster School of Lie Detection”, “Marston Polygraph Academy” 켄터키의 “National Polygraph Academy”, 텍사스의 “The Polygraph Institute”, “Texas DPS Law Enforcement Polygraph School”, “Veridicus International Polygraph Academy”, 펜실베이니아의 “Academy for Scientific Investigative Training”, “Northeast Counterdrug Training Center Polygraph Institute”, 플로리다의 “Academy of Polygraph Science”, “Academy of Polygraph Science Latin America, Inc.”, “International Academy of Polygraph”가 있다.

12) 라틴아메리카의 “Latin American Polygraph Institute”, 멕시코의 “Centro de Investigacion Forense y Control de Confianza, S.C.”, “Centro Mexicano de Analisis Poligrafico y Psicologico, S.C.”, “Instituto Latinamericano de Poligrafia Mexico”, “International Polygraph Studies Center”, “National Academy of Training and Investigations in Polygraph Analysis”, “National Center of Investigation and Security Polygraph Studies Unit”, 싱가포르의 “American Institute of Polygraph (Singapore)”, “MINDEF Center for Credibility Assessment” 영국의 “Behavioural Measures Institute”, 이스라엘의 “Gazit International Polygraph School”, “Israeli Government Polygraph School”, 콜롬비아의 “National Academy of Polygraph of the Police of Colombia”, “Latin American Polygraph Institute”, “Tudor Academy”, 페루의 “Latinamerican Institute for Credibility Assessment - LICA”가 있다.

래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여 본 연구자는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 수사기관의 우수한 교육내용을 선별하여 교육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제도가 수사기관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별 또는 검사관별 편차발생률을 줄여 검사결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수사기관의 교육예산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것이다.

둘째, 검사관을 교육시킬 교육강사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각 수사기관에서 검사관 양성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관 양성교육이 필요할 때마다 각 수사기관에서 규정해놓은 교육강사 조건을 바탕으로 적합한 강사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 수사기관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게 되면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강사 선발제도를 마련하여 전문교육강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검사관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별 검사관의 자격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은 KPA에서 발급하는 검사관자격을 대부분 소지하고 있어 검사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자체적인 검사관 양성교육을 통해 KPA에서 발급하는 검사관자격 없이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검사관자격은 있으나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고 검사업무에 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검사관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검사관의 전문성”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별 검사관의 자격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검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결 론

사회가 거듭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사방법으로 과학수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거짓말탐지기검사 역시 과학수사의 한 부분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문제점이 있다.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하여 신뢰하기가 곤란하다는 법원의 입장이다.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검사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검사관들의 교육기관을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논고에서 언급한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검사장비의 성능이 우수할 것”, “질문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관이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 일 것”에 대한 요건은 일원화된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증거능력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에 맞게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검사관의 교육기관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검사관 교육기관이 일원화 된다면 검사관양성이 필요할 때마다 검사관양성교육을 주관하던 수사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며, 검사관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검사관들의 능력을 표준화하여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수사기관에서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진모,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증명력 인정여부 고찰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명력 제고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V), pp. 488-489, 1996.
- [2] 박관규, 『거짓말탐지기검사』, 삼우사, 2003.
- [3] 박관규, “거짓말탐지기검사의 효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48, 1999.
- [4] 이순옥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확대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 2003.
- [5] 이승현,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범의 선진화 방안(Ⅲ)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76, 2012.
- [6] 정용기, “유전자감식정보 범안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통권 제2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p. 386, 2007.

[저자소개]



강 동 범 (Dong-beom Kang)

2010년 8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안전학 석사
2015년 2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

email : a039270@naver.com



배 두 열 (Du-yeol Bae)

2001년 8월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석사
2012년 8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현) 대구과학대학교 경호무도학과
학과장

email : 12bae@hanmail.net